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

귀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내역(인적사항,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)을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려고 합니다. 만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통지번호				통지일자	
신고 의무자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상호(법인명)			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**** (뒷4자리 "*"처리)
	주소(사업장)				
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항					
구 분	신고의무 위반			위반행위일	
	계좌 수	기준일	금 액		
미신고·과소신고					
명단공개 예정내역 및 소명기한					
명단공개예정일	년 월 이후				
명 단 공 개 방 법	관보게재,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				
소 명 기 한	년 월 일				

발 신 명 의

직인

1.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2.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(지방국세청) ○○○과 ○○○ 조사관(전화 : , 전송 :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